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~!

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?

-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, 형상, 모양, 색채성, 시각성,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고, 또 형상, 모양, 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,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·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'사용'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 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-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
-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
- 한 별의 한글 글자꼴, 한 별의 영문자 글자꼴, 한 별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, 한 별의 숫자 글자꼴, 한 별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별의 한자 글자꼴일 것

디자인설정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- 선등록여부 조사 자신의 창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 및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 한국 특허정보원(<http://www.kipris.or.kr>)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(디자인보호법 제9조)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 시에는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, 방문접수 시나 온라인 출원 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(납부자번호)를 특허청 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.
 - * 우편접수처 :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(우. 302-701)
 - * 온라인 수수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출원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patent.go.kr>) → 수수료관리 → 수수료납부 → 특허수수료(제증명 포함)납부 → 신용카드, 휴대폰, ARS, 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지로 홈페이지(www.giro.or.kr)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출원번호통지 출원서를 방문접수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 일로부터 약 10일~15일 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, 온라인 출원 시 특허로 홈페이지(<http://www.patent.go.kr>) → 출원신청 → 제출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심사 심사관은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, 거절이유 발견 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.
- 등록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3개월(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(1개월 이내에는 120%, 2~3개월 이내에는 130%, 4~6개월 이내에는 150%의 금액))이내에 최초 1~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 동 추가납부기간 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디자인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은 감면·면제 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 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」으로 납부기간 내에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서이트(<http://www.giro.or.kr>)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. (납부서[설정등록료]를 제출 후 납부도 가능한) 감면·면제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납부서 1부와 감면·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포기서[일부디자인포기]를 특허청에 접수한 다음날까지 디자인등록료납부서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서이트(<http://www.giro.or.kr>)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부서를 우편(등기)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디자인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